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 중이나, 철강 수입시 HS코드,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
- 나.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세관 절차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수립, 무역협정 이행,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
- 다. 또한,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,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
- 라. 따라서 ‘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’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(제16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5. 11. 18. ~ 12. 29.) 예정
- 3) 행정규제 : 향후 규제심사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수출입의 제한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
2.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

부 칙

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수출입의 제한) 법 제11조 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<u>항공 관련 품목의</u> <u>안전관리</u> 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 <신 설> <신 설>	제16조(수출입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. 1. <u>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</u> 2. <u>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692